

金審議委員會의 設置 根據인 條例는 廢止되는 內容입니다.

위의 內容을 우리 委員會에서 신중하게 審査한 끝에 既存 公共料金審議委員會를 廢止하고 더 安定된 物價對策과 消費者 保護를 위해서는 物價對策委員會의 設置運營이 질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同 條例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습니다.

구체적인 審査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報告 드린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의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그러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品質管理推進協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과 서울特別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5.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재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재정기획관, 서울지방국세청 직세국장 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교수·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p>수 있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10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비자보호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p> <p>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2조(심의안건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p>	<p>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p> <p>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폐지)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p> <hr/> <p style="text-align: center;">5. 서울特別市立精神病院設置및委託運營에 관한 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 style="text-align: right;">(15時 39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立精神病院設置및委託運營에 관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議事棒 3打)</p> <p>保健社會委員會의 柳光司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柳光司議員 존경하는 白昌鉉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저는 保健社會委員會所屬 柳光司議員입니다.</p> <p>지난 第67回 臨時會에 上程되었던 서울特別市立精神病院設置및委託運營에 관한 條例案에 대한 常任委員會의 審議結果를 報告드리고자 합니다.</p> <p>議案番號 第855號인 同 條例는 第67回 臨時會에서 質疑 答辯을 한 후 深度 있는 審議를 위하여 條例審査小委員會를 構成하여 가장 完備한 地方法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p> <p>이 條例案의 主要骨子는 첫째, 病院 運營은 醫療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에게 委託할 수</p>
--	--